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2. 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에 관한 내부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미비

사전송금 방식의 외화송금 취급시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바,

* 징구된 인보이스에 선적예정일이 기재되지 않거나 발행인 서명·인감이 날인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외화송금 처리 등

사전송금시 징구하는 서류, 확인해야 할 세부항목,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외화송금 관련 업무 프로세스 미흡

영업점은 외화 송금업무 취급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본점 A센터에 송금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본점 A센터가 처리해야 하는 송금거래의 기준(송금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점 A센터에 처리를 요청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업무의 처리가 어렵고

영업점의 요청으로 A센터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A센터에서 외화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업무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A센터가 처리하는 해외송금 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A센터에서 외화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등의 송금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여 처리하는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외화송금 관련 사후점검 미흡

영업점의 자점감사 항목 및 감사부의 내부감사 항목에 외화송금에 대한 점검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점에서도 외화송금 관련 특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외화송금업무에 대한 자점감사 및 본점의 내부감사·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영업점별 외화송금 규모·유형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외화송금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 ① 송품장상 청구금액보다 초과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② 외화송금 관련 증빙서류(송품장, 수입계약서 등) 및 외화송금신청서를 송금 전에 징구하였는지 여부
③ 증빙서류로 중계무역 관련서류(수출입 인보이스 및 반송신고필증)가 제출된 경우 수입물품의 도착지와 수출물품의 출하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④ 증빙서류로 화물 운송장이 제출된 경우 화물 위탁자(Consignor), 운송 의뢰인(Client) 및 인수자(Consignee)가 수출상 및 수입상과 일치하는지 여부(불일치시 사유 확인)
⑤ 증빙서류로 여행알선료(대행수수료) 관련 사업협력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동 계약서에 따라 알선회사가 알선을 받는 회사로부터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통지받고 있는지 여부 등

④ BPR시스템 관리 미흡

영업점에서 외화 송금 거래를 취급하면서 인보이스상에 송금 금액이 오기재 또는 미기재된 상태로 담당자가 송금 처리하였고,

이후 동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에 대한 사후보완을 위해 BPR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영업점 전결*로 삭제 처리하고 사후 보완한 인보이스를 새롭게 저장한 사례가 확인되는 바,

* BPR시스템의 이미지 자료는 지점의 팀장 이상 전결로 삭제 처리 가능

BPR시스템 저장자료는 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해야 할 중요 문서이며, 본점의 영업점 관리·감독등에 활용되는 문서이므로 임의적인 문서의 생성, 삭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